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효석 의원

2. 찬 성 자: 김영태 의원 외 16인

3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안전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(범죄예방 내용 추가로 제명에 '보호' 삽입)

나. 지원사업 내 범죄예방 내용 추가(안 제4조)

다. 소상공인지원센터 명칭 변경(소상공인종합센터)(안 제11조)

라. 시행규칙 삭제(법제처 권고 사항)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

2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센터 명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4조제8호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종합센터의 명칭을 현행화 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음.

- 다만, 지원 대상이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어 여타 취약 소상공인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